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98호 2013. 12. 17.(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4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10
-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규 칙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1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 예방 활동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장, 서인천우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서구관내 기관 단체장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단체장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서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대상) 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주민
2. 기초생활수급자(만 3세 이상)
3. 장애인 1~3급(만 3세 이상)
4.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

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계약 조건 (뒷쪽)

“수탁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접종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 만 65세이상 주민과 ()
이어야 한다.
- ② 대상자 1인당 1회 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며, 지정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접종시(노인정,복지관등) 접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 없이 1인당 ()원으로 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④ 반드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⑤ 비용상환 신청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접종 당일 입력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수기기록에 의한 청
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보관에 있어서 항상 2℃ ~8℃의 냉장온도를 유지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⑦ 예방접종(인플루엔자)약품은 국산 제품 및 수입 완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수입완제품(생백신포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접종비 지급은 국산제품과 같으며 접종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 ⑧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 확인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
민등록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하여 주소를 확인한다. 대상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는 매년 결정되는 사항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20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처리비용을 별표 1과 같이 부과 징수한다.”를 “처리비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 시에는 처리비용 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단위	규 모 별	계	수집·운반 수 수 료	공공처리시설 사 용 료
10당	허가대상시설	10원	7원	3원
	신고대상시설	9원	7원	2원
	신고대상시설미만 시설	8원	7원	1원

주)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3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각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총괄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과·소·동장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과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청백-e 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와의 협약
-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관리자

-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하여야 한다.
-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 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1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 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제14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 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